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37

제출일자 : 2019. 03. .

제 출 자 : 거창군수

1. 요구이유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목욕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 위생 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중인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사업의 효율적 관리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거창군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나. 사 업 량 : 목욕 차량 1대, 이용자와 차량 운행 관리

다. 위탁대상 사무

- 목욕차량 위탁운영(1대)
-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목욕차량 이용자 선정 등 관리

라. 그간 운영상황

- 수탁기관 : 거창군 삶의 쉼터 장애인 복지관
- 위탁기간 : 2016. 3. 1. ~ 2019. 2. 28.
- 위탁차량

차 종	규 격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봉고3	특장탐차	99수1020	2011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유

-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을 받지 못한 불편 어르신들에게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위생 유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목욕차량의 운영이 필요함
- 매년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98%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음
- 담당부서의 업무과중과 이용자의 원활한 목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함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다. 향후일정

-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지정
 - 수탁기관 : 거창군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관장 신정란)
 - 위탁기간 : 3년
 - 위탁내용 : 목욕차량(1대) 운행서비스 사무업무·관리 등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30,000천원

마. 위탁운영 계획안 : 붙임 참조

거창군 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운영계획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목욕에 대한 욕구해소와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코자 함

1. 추진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 거동불편 독거노인 재가목욕서비스
 - 이용인원 : 960명(18년 기준) / 월평균 이용자 40명, 월2회씩 목욕(하루 4~5명)
- 운영방법 : 거창군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 사 업 비 : 30,000천원(군비)

3. 그간의 추진사항

- 수탁기관 : 거창군 삶의 쉼터 장애인복지관
- 위탁기간 : 2016. 3. 1. ~ 2019. 2. 29./3년간
-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명,천원)

구 분 \ 년 도	2015	2016	2017	2018	비고
수혜자	630	840	820	960	누적인원
예산지원	27,000	28,000	28,000	28,000	

4. 위탁계획

- 수탁기관 : 거창군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관장 신정란)/수탁기관 재지정
- 위탁기간 : 2019. 3. 1. ~ 2021. 12. 31.
- 위탁내용 : 목욕차량(1대) 운행서비스 사무업무 관리 등

차 종	규 격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봉고3	특장탑차	99수1020	2011	

4. 위탁조건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
- 위·수탁 협약서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7. 소요예산 : 30,000천원/년

8.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위생 청결 문제 해결로 삶의 질 향상
- 장애인 가족의 부양 책임 감소와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

관 계 법 령(요약)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